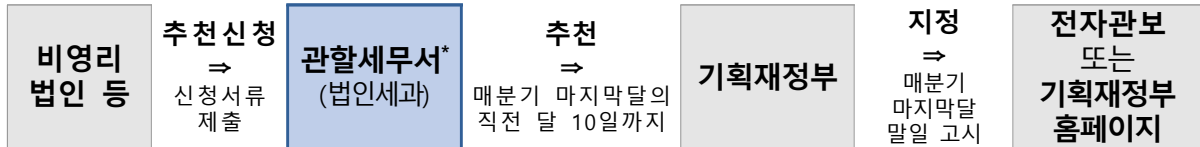


「공익법인」 (구, 지정기부금단체) 지정추천 신청

[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]

신규 지정(재지정) 신청시

1. 지정추천 절차



* 2021.1.1.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지정추천 업무 이관 (주무관청→국세청)

< 분기별 신청기간 >

구 분	분기별 신청기간	국세청 추천기한	기재부 지정일
1분기	전년도 10/11 ~ 당해연도1/10	2/10	3/31
2분기	당해연도 1/11 ~ 4/10	5/10	6/30
3분기	당해연도 4/11 ~ 7/10	8/10	9/30
4분기	당해연도 7/11 ~ 10/10	11/10	12/31

2. 신청 대상법인

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비영리법인·비영리외국법인·사회적협동조합·공공기관(공기업 제외)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

지정요건(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1호 바목)

가) 「민법」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: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*

(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·지원,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 교류·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)

*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의 취지는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회원 및 소수의 특정인만을 위해 한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

①

나)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: 정관의 내용상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93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

다)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: 설립목적이 사회 복지·자선·문화·예술·교육·학술·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

※ 1. 공익목적 아닌 회원 또는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거나 친목도모 성격의 단체는 지정대상에서 배제됨

2. 단체명에 생존하는 특정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 기부금단체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<p>②</p>	<p>○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*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</p> <p>* [잘못된 사례]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, 유사한 다른 법인,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 (∴ 가능한 정관에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)</p> <p>** 다만, 사회적협동조합이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104조에 따라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리를 정관에 규정한 경우 인정</p>
<p>③</p>	<p>○ 인터넷 홈페이지(블로그, 카페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, ①포털사이트 검색이 가능하고, ②연중 자료열람에 제한이 없는 등 홈페이지의 기능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)가 개설¹⁾되어 있고,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²⁾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</p> <p>1) 홈페이지 주소를 추천 신청서에 기재하고, 반드시 불특정다수가 공익목적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명의의 독립된 한글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</p> <p>2)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함</p> <p>○ 법인의 공익위반사항을 관리·감독할 수 있는 기관(국민권익위원회,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)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·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</p> <p>※ 재지정신청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</p>
<p>④</p>	<p>○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「공직선거법」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</p> <p>*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</p>
<p>⑤</p>	<p>○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턴 3년이 경과하였을 것</p> <p>* 지정요건(①~③)을 지키지 못하여 지정취소(재지정제한)된 경우에는 ⑤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</p>

※ 신청 대상 유의사항

- 그동안 법령 등에 의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었던 아래의 단체는 2021년부터 지정추천 절차를 통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(기부금단체)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음

<p>신규 신청</p>	<p>■ 2018. 2. 13. 전에 인·허가 받은 학술연구·장학·기술진흥·문화예술·환경단체</p>
<p>재지정 신청</p>	<p>■ 2018. 2. 13. 전에 (구)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2로 지정됐던 기부금단체 ■ 2018. 1. 1. 전에 (구)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7로 지정됐던 단체 중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단체</p>

- 법인세법에서 별도 규정된 기부금단체*에 해당하는 경우, 지정추천 신청을 받지 않아도 관련규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
- * 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2항제1호(특례기부금),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~마목(구. 당연 일반기부금단체),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2호다목(공익목적 기부금 범위)을 적용받는 경우

3. 신청시 구비서류

- ① 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(별지 제63호의5 서식)
- ② 법인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

구분	제출서류
민법상 사단·재단 법인,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	법인설립허가서
사회적 협동조합	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
비영리외국법인	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법인의 설립에 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영문서류는 한글 번역서류도 포함하여 제출)

- ③ 정관
- ④ 최근 3년간(2021년~2023년)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(2024년) 예산서
 - * 제출일 현재 법인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(i)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, (ii)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, (iii)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·지출 내역서를 제출
- ⑤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(2024년~2026년)*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* 재지정 신청의 경우 5년(2024년~2028년)
- ⑥ 법인 대표자의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(별지 제63호의6 서식)
- ⑦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
- ※ 신규신청시: ①~⑥, ⑧제출 / 재지정 신청시: ①~⑤, ⑦, ⑧제출
- ⑧ 선거운동 사실여부 확인서(임의서식이나 선거운동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)

4. 신청방법

- ① (홈택스)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통한 전자 접수
 - * 홈택스(공인인증서 로그인) > 지급명세서·자료제출·공익법인 >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/공시 > 공익법인 지정 신청 > 공익법인[(구) 지정기부금단체] 지정 추천 신청
- ② (우편/방문) 주사무소 및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*에 구비서류 접수
 - * 신청서 서식 : 국세청 누리집(www.nts.go.kr) > 국세신고안내 > 법인신고안내 > 공익법인 > 공익법인(구'지정기부금단체') 지정추천 신청

5. 지정기간 등

① 지정기간

- (신규)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('24.1.1.~'26.12.31.)
- (재지정)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('24.1.1.~'29.12.31.)

②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

- (법인)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%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
- (개인)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%(종교단체 10%)를 한도로 기부금의 15%(1천만원 초과분은 30%)를 세액공제
단,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

6. 법인세법상 의무사항

① 공익법인 의무이행 사항

-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·고시한 공익법인등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, 매 사업연도마다 의무이행 여부를 「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(별지 제63호의10 서식)」에 의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'국세청'에 제출

☞ 아래의 의무를 미이행하거나, 미보고시 공익법인등 지정취소 사유가 됨

① 지정요건 ①~③을 모두 충족할 것

- ①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,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
- ②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, 지자체, 유사한 목적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
- ③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, 홈페이지를 통해 「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」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, 공익위반제보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,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이 해당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

②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

- ③ 매년 「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」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*에 각각 공개할 것(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공개) 단, 결산서류 등을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한 경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

* 홈페이지 > 지급명세서·자료제출·공익법인 >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/공시 >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

④ 공익법인등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

⑤ 각 사업연도의 지출액(수익사업 지출 제외)의 80%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

⑥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

* '21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)

⑦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

⑧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등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시할 것

⑨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

② 공익법인 지정취소 사유

- ① 상증세법상 의무위반으로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(가산세 포함) 추징된 경우
-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가.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경우
 - 나. 위 법인세법상 지정요건 및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(전용계좌 개설·사용, 결산 서류 등 공시, 외부 회계감사의무 제외*)

* '21.1.1. 이후 의무사항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

다.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
- ③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
- ④ 법인의 대표자, 임원, 직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
- ⑤ 법인이 해산한 경우

③ 재지정 배제사유

- 공익법인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지정기간 중 위 “공익법인 지정취소 사유”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정기간 종료 후 3년간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 배제

④ 기부금영수증 관련 의무사항

- 「기부금영수증」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63호의3 서식(또는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5호의2 서식)으로 발급
-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「기부자별 발급명세」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(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75호의2 서식,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9호의7서식(1))
 - *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외
-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을 기재한 「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」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*(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75호의3 서식)
 - *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> 지급명세서·자료제출·공익법인 > 과세자료 제출 > 소득·법인세 관련 자료 제출 >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/내역조회
 - **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외

7.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사항

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등의 경우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2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다음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

☞ 아래의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지정취소 되거나, 증여세 또는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

① 국세청에 제출·신고해야 하는 서류

구 분	내 용	
① 전용계좌 개설 신고	• 대상	모든 공익법인 (종교단체 제외)
	• 신고기한	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
②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	• 대상	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
	• 제출기한	사업연도 종료일부턴 3개월 이내
③ 결산서류 공시	• 대상	모든 공익법인(종교단체 제외) 다만,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인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가능
	• 공시기한	사업연도 종료일부턴 4개월 이내
④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	• 대상	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,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
	• 제출기한	사업연도 종료일부턴 4개월 이내
⑤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	• 대상	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(종교, 학교법인 제외)
	• 제출기한	사업연도 종료일부턴 4개월 이내

② 공익법인 운영시 지켜야 하는 의무

구 분	내 용	
① 장부의 작성·비치	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 (10년간 보존)	
② 전용계좌 사용	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대해서 전용계좌 사용	
③ 출연재산 등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	출연재산	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
	매각대금	1년 내 30%, 2년 내 60%, 3년 내 90%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
	운용소득	1년 내 80%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
④ 주식 취득·보유	출연 받거나, 취득하는 경우	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일정 비율* 초과 보유 금지 * 10%(자선·장학·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고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20%),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거나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8조 제11항 요건을 불충족한 경우 5%
	계열기업의 주식보유	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% (외부감사 등 예외적인 경우 50%) 초과보유 금지
⑤ 이사구성 등 제한	출연자 등이 이사의 1/5 초과 금지 또는 임직원 취임 금지	
⑥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	외부 회계감사의무 공익법인, 결산서류 공시 대상 공익법인 (의료법상 의료법인,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제외)	
⑦ 기 타	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, 자기내부거래 금지,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 제공 금지 등	

법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

- 이미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 등이 당해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(또는 홈택스)로 공익법인 등 명칭변경 신청(지정추천 신청기간과 동일)
 - 구비서류 : ① 공익법인 등 명칭변경 신청서(별지 제63호의5 서식)
 - ② 정관(구 정관, 신 정관, 신규 대비표 첨부)
- 해당 법인이 명칭변경 후에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기획재정부로 명칭변경 의뢰하고 기획재정부에서 매분기 종료일까지 그 사실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

개정사항 안내

- 지정추천 신청 관련('21.1.1.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)

현 행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지정신청) 비영리법인 등 → 주무관청 ○ (지정추천) 주무관청→기획재정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지정신청) 비영리법인 등 → 국세청(소재지 관할세무서) ○ (지정추천) 국세청→기획재정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지정기간) → 6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지정기간) 이원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규지정 : 3년 - 재지정 : 6년* * 신규지정 후 사후관리 결과 공익성이 부합되는 단체만 재지정

- 의무이행 보고기관('21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)

현 행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절차 기부금단체(의무이행여부 보고) → 주무관청(점검 및 결과 통보) → 국세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후관리 절차 변경 기부금단체(의무이행여부 보고) → 국세청(소재지 관할세무서)

○ 기부금단체 명칭통일('21.1.1. 부터 시행)

현 행	개 정
○ (법인세법) 법정기부금단체, 지정기부금단체	○ (법인세법) 공익법인
○ (소득세법) 기부금대상 민간단체	○ (소득세법) 공익단체

○ 의무이행 보고기한 연장('21.1.1. 당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)

현 행	개 정
○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 :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	○ 보고기한 연장 : 3개월 → 4개월 이내

○ 기부금 모금액 등 공개기한 연장('21.1.1. 이후 공개·공시 분부터 적용)

현 행	개 정
○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	○ 공개기한 연장 : 3개월 → 4개월 이내
<단서 추가>	- 상증법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*한 경우 동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* 상증칙§25⑥에 따른 표준서식으로 공시한 경우에 한함

○ 기부금단체 명칭 변경('23.1.1. 부터 시행)

현 행	개 정
○ 법법§24②에 따른 기부금	○ 특례기부금
○ 법법§24③에 따른 기부금	○ 일반기부금

○ 공익법인 등 지정요건 중 정치활동 금지요건 명확화(법인령§39①(1)바목)

- 지정요건 중 해당 법인의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'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'을 '선거운동한 사실이 없을 것'으로 변경

○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의무이행보고 대상 제외(법인령§39⑥)

-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의무이행보고 대상에서 제외함

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(홈택스 접근경로)

■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가능

- * 홈택스 > 지급명세서 · 자료제출 · 공익법인 >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/공시 > 공익법인 지정 신청 > 공익법인[(구) 지정기부금단체] 지정 추천 신청



지급명세서 제출 · 과세자료 제출 ·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/공시

- (일용 · 간이 · 용역) 소득자료 제출
- (근로 · 사업 등) 지급명세서 제출
- 과세자료 제출
-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/공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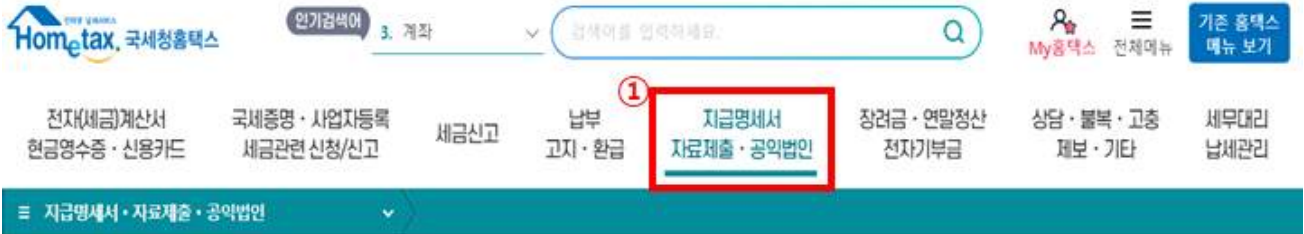
□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/공시 ?

공익법인 포털 바로가기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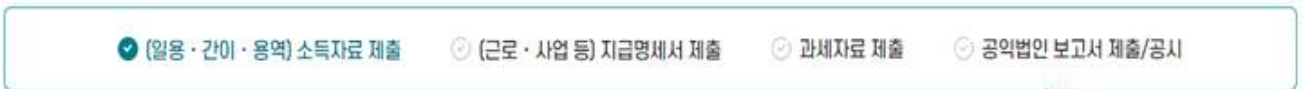
공익법인 보고서 제출/공시	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-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	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열람 -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열람	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- 공익법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- 공익법인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열람
	출연재산 및 의무이행 보고 -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-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-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(기부금단체 제출)	감사인 관련 - (공익법인용)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- (감사인용) 지정감사인 신청서 제출	2 공익법인 지정 신청 - 공익법인[(구) 지정기부금단체] 지정 추천 신청

지정결과 조회 [홈택스 접근경로]

■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> 지급명세서 · 자료제출 · 공익법인 > 공익법인 포털 바로가기 > ② 공시/공개 열람 > 기부금단체 간편조회(기획재정부 장관 지정)



지급명세서 제출 · 과세자료 제출 ·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/공시



공익법인 보고서 제출/공시

공익법인 보고서 제출/공시	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-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	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열람 -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열람	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- 공익법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- 공익법인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열람
	출연재산 및 의무이행 보고 -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-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-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(기부금단체 제출)	감사인 관련 - (공익법인용)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- (감사인용) 지정감사인 신청서 제출	공익법인 지정 신청 - 공익법인(구)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천 신청

공익법인안내 포털

공익법인이 이행하여야 할 법령의무와 각종 신청·발급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.

1 공시/공개 등록

- 결산서류 등 공시등록
- 동향자료작성(결산서류 등, 출연재산보고서 제출)
-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

2 공시/공개 열람

- 결산서류 등 공시열람
-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열람
- 결산서류 등 제공신청 및 내려받기
-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(기획재정부장관 지정)**

3 신고/보고

-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(의무전문가 사무확인서 제출)
-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신고
- 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신고
- 공익법인 의무이행보고 (기부금단체 제출)

4 기부금단체 추천/보고

5 전자기부금영수증

6 주기적 감사인 지정

7 공익법인 탈세제보

사 업 계 획 서(자율양식)

※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·활용할 수 있습니다.

I. 주요사업 목표

- 1.
- 2.
- 3.

II. 세부사업 내용

1. (제1사업명)

가. 목 적 :

나. 사업내용 :

(1) 사업기간 :

(2) 장 소 :

(3) 수혜대상 :

다. 기부금 모금 목표액 :

라. 기부금 관리방법 :

마. 세부추진계획 :

바. 소요예산 : 금○○○원

(1) 인건비 :

(2) 운영비 :

(3) 기 타 :

2. (제2사업명)

3. (제3사업명)

공익법인 등의 대표(이사장)

(서명 또는 인)

공익활동보고서(자율양식)

※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·활용할 수 있습니다.

I. 주요 공익활동 실적

- 1.
- 2.
- 3.

II. 공익활동 실적

1. (제1공익활동)

가. 목 표 :

나. 활동내용 :

(1) 활동기간 :

(2) 장 소 :

(3) 수혜대상 :

다. 기부금 지출액 : 금○○○원

(1) 인건비 :

(2) 운영비 :

(3) 기 타 :

라. 당초 사업계획 달성 여/부 :

마. 기타사항 :

2. (제2공익활동)

3. (제3공익활동)

※ 첨부 : 공익활동 행사사진, 홍보책자, 기타 유인물 등 다양한 자료 첨부

공익법인 등의 대표(이사장)

(서명 또는 인)